

22년 달라지는 FTA 관세행정

CONTENTS

I. RCEP 활용지원 관련 주요 이행지침

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1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7
3.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지정 확대	12
4.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21
5.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개선	23
6.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8

II. FTA 관세특례법령 주요 개정사항

1. 원산지소명서 서식 개정	31
2.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개정	35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개정	39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47

III. 신규 FTA 주요 내용

1. 한-이스라엘 FTA	51
2. 한-인도네시아 CEPA	53
3. 한-캄보디아 FTA	55

IV. 주요 민원 질의·해석 사례

1. RCEP	59
2. 기타 협정	63



RCEP 활용지원 관련 주요 이행지침

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22. 5. 18. 제정

이 지침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은 각각 “RCEP”, “한-아세안 FTA”,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지칭함

I. 목 적

- 이 지침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과 관련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적용 대상

-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계약상대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하거나,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

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 발급 업무 집행 지침

Ⅲ.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 발급

1. 유의사항

가. RCEP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RCEP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 발급 요건

-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RCEP 원산지증명의 유효한 원본 제시
-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3-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나.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 · 발급된 원산지증명 원본*(이하 “원본 원산지증명”이라 한다)의 작성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연결 원산지증명이 작성 · 발급될 수 있음.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 시행령 제4조제5항이 또는 제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RCEP 제3.16조제1항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원산지증명

다. 연결 원산지증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하 “대상물품”이라 한다)은 국내에서 수입통관 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는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 발급 시 고려하지 않음

라.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추가 가공 되거나, 사용 · 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 · 발급할 수 없음

마. 대상물품은 국내에서 양 · 수도될 수 있음. 이 경우 대상물품을 최종적으로 양수받은 수출자는 원본 원산지증명과 함께 양 · 수도 입증서류를 갖추고 양수받은 대상물품의 범위 이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 · 작성하여야 함

바.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명방식을 사용하거나 동일한 발급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 (예시)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을 A, B에게 양도하는 경우, A, B는 각각 자신이 양수받은 물품의 범위 내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하나의 세관(상의)에 발급 신청 또는 인증수출자로서 자율 발급



사. 대상물품이 최종 수입국에서 RCEP 제2.6조에 따른 관세차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하는 자가 RCEP 원산지국가를 입증하여야 함

* 최종 수입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의 부록 적용 물품이거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PE)되어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차별을 적용받는 물품

아. 연결 원산지증명을 발급 신청·작성한 자, 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양·수도한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RCEP 제3.24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2. [기관발급]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연결 원산지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원본 원산지증명. 다만, 발급기관장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형태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서면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아래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서명)

②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을 인쇄한 것

③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을 인쇄한 것

▶(전자본) 다음 중 하나의 것

① 전자적 형태(Digital Format)로 발급받은 파일(PDF 등)

② 종이 원본을 스캔하여 이미지화한 파일(PDF, JPEG 등)

2)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출서류.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반송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각 목의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1.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 · 발급 업무 집행 지침

3)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 간 동일성 증빙 서류

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다만, 보세구역에 보관된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음

나)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서류 사본

※ 다만, 2) 서류의 수출관리 부호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가) [72번]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후 원상태로 수출

나) [78번]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단, 중계무역 수출 제외)

다) [79번] 중계무역수출

라) [93번] 수입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4) 이 지침 1. 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품의 국내 양 · 수도 사실과 거래 수량(중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이 지침 1.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RCEP 원산지국가 입증서류*

* 최초 수출국의 수출자 · 생산자가 작성한 해당 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송품장 사본 등

나.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관세청, '21.6.29.)에 따른 자동심사를 적용하지 않음

다.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대상물품의 RCEP 제3.19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되,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라.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제반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따름

3. [자율증명] 연결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 RCEP 연결 원산지신고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

1)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2)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만, RCEP 인증받은 품목(HS6단위 기준)으로 한정

나.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이 지침 2. 가.에 규정한 증빙서류에 기초하여 연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에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Ⅳ.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1. 유의사항

가.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7조제2항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

- ①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

나.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양·수도 되거나, 추가 가공 또는 사용·소비된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

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서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가지며, 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 제14조, 제15조 및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라. Ⅲ. 1. 나. 또는 다.의 유의사항은 한-아세안 FTA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도 준용함

2.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 신청인은 발급기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함께 Ⅲ. 2. 가. 1)부터 3)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발급기관장은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대상물품을 수입하였는지 여부, 원본 원산지증명의 물품과 연결 원산지증명 발급 신청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HS 품목번호 등

다. 그 밖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Ⅲ. 2. 라.를 준용

Ⅴ.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2.5.18. 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연결 원산지증명에 대해 적용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시행규칙 제10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라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22.5.18.)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이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자율증명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인 증수출자만이 작성할 수 있음
2. 이 서식의 작성 요령(OVERLEAF NOTES)은 작성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인쇄될 필요 없음
3. 다른 서식을 사용하거나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RCEP 협정 제3.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3-나 제2항에 규정된 최소 정보 요건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있음
4. 수출물품의 경우 안정적 특혜 적용을 위해 협정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이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



Declaration of Origin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nique reference number: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2. Authorization code		
3.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if known)				4.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5. Item number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8. Origin Conferring Criterion	9. RCEP Country of Origin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1.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Name of Signatory: Signature:						
☐ 14. ☐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 Third-party invoicing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권고 서식이며,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 “Unique reference number”란에는 이 신고서의 작성자에 의해 부여된 임의의 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 번호, 상업송장의 일련 번호 등
- 제1란에는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제2란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 제3란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생산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NOT AVAILABLE”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제4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 제5란에는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 제6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 제7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제8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화학반응	CTC RVC CR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	DMI

-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다)를 사용한 경우 상기 표의 기재 문구를 대신하여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실제로 사용된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CTH, RVC 48% 등)
-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나) 또는 (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기재문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시: CTC, DMI)



11. 제9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적용된 경우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적용된 경우에는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상 황	제9란 RCEP 원산지 국가에 기입
(가)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하지 않음	수출 당사국명 기재
(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으나,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지 않음	
아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경우, (다)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며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함	
(라) 상품이 협정 제3.2(가)조에 따라 완전획득 또는 생산됨	
(마)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다)조에 의한 부속서3-7(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	
(바)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고,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함	

12. 제10란에는 총중량 등 상품의 수량과 함께 제8란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 가격(FOB)을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4. 제12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습니다. 다만, 제14란에 "√"표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세정보를 이 난에 기재합니다.

15. 제13란에는 이 서식의 작성자가 수입 국가명, 작성 일자, 작성자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합니다.

16. 제14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협정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란에 "√"표시 합니다. 이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로 한정)를 제12란에 적습니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제12란에 적습니다.

2.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Continuation Sheet

Unique reference number:

5. Item number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8. Origin Conferring Criterion	9. RCEP Country of Origin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1.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Name of Signatory: Signature:						

3.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지정 확대

▣ 제도 개요

- (목적)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출기업 FTA 활용편의 제고
- (근거)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FTA 특례고시 별표2의2
- (내용)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FTA 협정 상 원산지(한국산)가 인정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 제출 생략
 - * 예 : 강력분(1101.00) + 팜유(1511.90) + 분말스프(2103.90) → 라면(1902.30)
 - ↳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2단위 세번이 변경**되어 원산지기준 충족(한국산 인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반 수출물품	간이확인 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수출신고필증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조공정도, BOM, 원재료수불부 등)	○국내 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는 품목 (관세청 고시)*은 (좌 동) <u>국내제조확인서</u>로 대체

▣ 대상 품목

- (대상) 한-중 FTA 등 5개 협정, 총 293개 품목 활용 가능

협 정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한-인도	RCEP
품목수	226	206	194	80	255

※ 협정별 중복 품목 제거 시 총 293개 품목

3.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지정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84호, '21. 12. 31.)

2. 개정사유

- '22년 2월 1일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시행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기업의 원산지증빙절차 간소화를 위해 현행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중 동협정 활용 가능한 물품(총 255개) 발굴·지정(별표 2의2)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①iv나목]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반영하여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34, §35)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2. 5. 10.

[별표 2의2]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의사항〉

1. 동 별표의 품목번호, 품명 등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타 목적(예: 품목분류 확인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서 제외합니다.
 - 가. 국내에서 반가공품(블랭크)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국내에서 수행된 공정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동 별표에서 정한 국내 필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거나, 비교란의 적용 제외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간이확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K)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1	1902.19-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1	2503.0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2	1902.19-2000				
3	1902.19-3000				
4	1902.30-1010				
5	1905.90-1040				
6	1905.90-1090				
7	2005.99-1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12	2710.12-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8	2008.99-5010				
9	2101.11-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3	2710.19-202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4	2710.19-2020	
			15	2710.19-5020	한-인도 CEPA, RCEP
			16	2713.20-0000	
10	2208.90-4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7	2902.2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8	2902.30-0000	

3.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지정 확대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19	2902.43-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43	3907.69-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44	3909.40-0000	
			45	3909.50-0000	
20	2909.43-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46	3917.4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21	2917.14-0000		47	3918.90-0000	
22	2917.35-0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48	3919.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3	2917.36-1000		49	3919.90-0000	
24	2917.37-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0	3920.10-0000	
			51	3920.20-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2	3920.49-0000	
25	2917.39-1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53	3920.51-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6	2929.1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27	3005.1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54	3920.61-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8	3212.10-0000		55	3920.99-9090	
29	3215.19-0000		56	3921.13-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30	3305.10-0000		57	3921.19-1010	
31	3401.30-0000		58	3921.90-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32	3506.91-1000		59	3921.90-4020	
33	3506.91-9000		60	3923.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34	3707.90-1090		61	3923.21-0000	
35	3817.0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62	3923.29-0000	
36	3901.10-9000	한-아세안 FTA, RCEP	63	3923.30-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37	3903.20-0000		64	3924.10-0000	
38	3903.3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65	3926.90-9000	
39	3903.90-1000		66	4002.11-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40	3904.22-0000				
41	3906.10-0000				
42	3907.61-0000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67	4002.2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95	5407.72-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68	4002.59-0000		96	5407.82-2000			
69	4005.10-1000		97	5407.92-2000			
70	4009.21-0000		98	5502.10-1000	한-아세안 FTA, RCEP		
71	4009.31-0000		99	5503.2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72	4009.32-0000						
73	4011.10-1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100	5503.20-9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74	4011.20-1010						
75	4011.20-1090		101	5503.40-0000	한-아세안 FTA, RCEP		
76	4016.93-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2	5503.9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77	4107.9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03	5601.22-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78	4114.20-1000						
79	4805.24-9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4	5607.49-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80	4810.29-0000						
81	4810.92-1010						
82	4810.92-9000		105	5807.10-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83	5205.23-1000		106	5902.20-0000			
84	5402.11-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7	5903.10-0000			
			108	5903.20-0000			
85	5402.2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09	5903.90-0000			
			110	6001.10-2000			
86	5407.10-2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11	6001.21-0000			
87	5407.42-0000		112	6001.22-0000			
88	5407.52-0000		113	6001.92-0000			
89	5407.53-0000		114	6004.10-0000			
90	5407.61-1000		115	6004.90-0000			
91	5407.61-2000		116	6005.35-2000			
92	5407.61-4000		117	6005.36-0000			
93	5407.69-2000		118	6005.37-0000			
94	5407.69-4000		119	6006.22-0000			

3.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지정 확대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120	6006.23-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43	7208.26-9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21	6006.24-0000		144	7208.27-1000	
122	6006.32-0000		145	7208.27-9000	
123	6006.34-0000		146	7208.36-1000	
124	6006.42-0000		147	7208.36-9000	
125	6006.44-0000		148	7208.37-1000	
126	6006.90-0000		149	7208.37-9000	
127	6116.10-0000	한-중 FTA, RCEP	150	7208.38-1000	
128	6307.1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151	7208.38-9000	
129	6309.00-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52	7208.39-1000	
130	6909.1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53	7208.39-9000	
131	7006.00-4000		154	7208.51-1000	
132	7113.19-1000		155	7208.51-9000	
133	7113.19-2000		156	7208.52-1000	
134	7114.19-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57	7208.52-9000	
135	7114.19-9000		158	7208.54-1000	
136	7202.11-0000		159	7208.54-9000	
137	7202.19-0000		160	7209.16-1000	
138	7202.3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61	7209.16-9000	
139	7204.21-0000		162	7209.17-1000	
140	7208.25-1000		163	7209.17-9000	
141	7208.25-9000		164	7209.18-1000	
142	7208.26-1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65	7209.18-9000	
			166	7209.27-1000	
			167	7209.27-9000	
			168	7210.1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169	7210.49-101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170	7210.61-0000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71	7212.40-2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172	7216.33-4000	
			173	7217.10-0000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174	7223.00-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95	7409.19-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96	7409.21-9000	
			197	7409.29-9000	
175	7226.92-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198	7410.11-0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99	7411.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76	7227.90-909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200	7412.10-0000	한-아세안 FTA, RCEP
			201	7413.00-0000	한-중 FTA, RCEP
177	7228.5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202	7502.1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178	7305.11-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03	7502.20-0000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04	7601.20-1000	
			205	7601.20-2000	
179	7306.40-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06	7604.21-0000	
180	7306.40-2000		207	7604.29-9000	
181	7306.5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08	7606.1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182	7307.91-0000				
183	7307.93-0000		209	7606.92-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84	7309.00-0000				
185	7310.10-0000				
186	7312.10-2099				
187	7318.15-1000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188	7318.15-2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10	7607.11-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189	7318.15-3000				
190	7318.16-0000		211	7607.2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191	7323.93-0000				
192	7326.90-9000				
193	7408.11-0000		212	7608.20-0000	
194	7409.11-9000				

3.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RCEP 지정 확대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213	7610.90-9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44	8418.10-103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45	8419.40-0000	
			246	8419.50-9000	
214	7801.10-1000	247	8420.10-9000		
215	7801.10-9000	248	8421.23-1000		
216	7801.99-2090	249	8422.20-0000		
217	7901.11-0000	250	8422.30-2000		
218	7901.12-0000	251	8422.30-3000		
219	7902.00-0000	252	8422.40-4000		
220	7904.00-3000	253	8422.40-9010		
221	8113.00-0000	한-아세안 FTA	254	8422.40-9020	
222	8302.10-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55	8422.40-9030	
223	8302.20-0000		256	8424.10-0000	
224	8302.30-0000		257	8438.20-0000	
225	8302.42-0000		258	8474.80-2000	
226	8403.10-1000	한-중 FTA, RCEP	259	8477.20-2000	한-중 FTA, RCEP
227	8403.10-3000		260	8477.40-0000	
228	8412.21-1000		261	8477.80-0000	
229	8413.30-4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62	8479.81-3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230	8413.30-9000		263	8479.82-1000	
231	8413.81-9000		264	8479.82-4000	
232	8414.30-1000		265	8481.20-1000	한-중 FTA, RCEP
233	8414.59-9000		266	8481.20-2000	
234	8414.80-1000		267	8481.30-0000	
235	8414.80-9190		268	8481.40-0000	
236	8414.80-9210		269	8481.80-1010	
237	8414.80-9220		270	8481.80-1030	
238	8414.80-9230		271	8481.80-2000	
239	8414.80-99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72	8482.10-2000
240	8415.10-2010				
241	8415.10-2020	273		8482.10-9000	
242	8415.10-9020				
243	8417.10-2010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연 번	HS	활용대상 협정		
274	8482.2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86	8507.60-9000	한-중 FTA, RCEP		
275	8482.40-0000		287	8507.8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RCEP		
276	8483.10-9010						
277	8483.30-9000		288	8514.40-9000	한-중 FTA, RCEP		
278	8483.40-9010		289	9001.30-0000	한-아세안 FTA, RCEP		
279	8483.50-9000		290	9001.50-1000			
280	8501.1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91	9001.90-1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RCEP		
			292	9001.90-3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		
281	8505.19-1000	한-중 FTA, RCEP					
282	8505.19-9000						
283	8507.10-0000	한-중 FTA, 한-베트남 FTA	293	9603.29-0000	한-중 FTA,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 CEPA, RCEP		
284	8507.60-2000					한-중 FTA, RCEP	
285	8507.60-3000						

※ 해당 표는 원산지 간이확인물품 확인을 위해 간소화한 자료로, 상세한 품명 및 적용요건은 반드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2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 서 류 명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2. 발급기관 : 홍콩세관
3. 대상물품 :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 중 이 지침 4.의 대상협정에 대해 협정(특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
4. 대상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5. 발급기준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Ⅰ→Ⅱ→Ⅲ→Ⅳ)

내 용	유 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여부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 ¹ 이 발급되는 화물	Ⅰ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Ⅱ	컨테이너 화물 ²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Ⅲ	벌크화물 ³	홍콩내 미보관	불필요
			홍콩내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 ⁴	불필요
-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 컨테이너 적·출입된 화물 ⁵	Ⅳ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홍콩내 보관	필요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물품의 모든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을 의미함
- (예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중화→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에 해당

3. 물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Super Terminal One, ④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Asia Airfreight Terminal, ⑦DHL Central Asia Hub

5. 대상협정이 한-중 FTA인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출된 화물”로 적용할 수 있다.

6. 발급절차 등 : 홍콩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v.hk>) 참조

* [경로] Home > Trade Facilitation > Free Trade Agreement Transhipment Facilitation Scheme(FTA Scheme)

7. 시행일 : 이 지침은 2022. 5. 10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홍콩세관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도 유효성 인정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7.4.7.개정) 및 「홍콩 해관 APTA 중국발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19.7.4.제정) 은 폐지함

〈참고자료〉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견본 서식

確認書號碼:
Certificate No.: CC/19/____(S)



香港海關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中轉確認書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致 申請者:
為符合內地與不同國家及地區所簽訂的自由貿易協定下的「直接運輸」之要求, 下列貨物在香港停留期間曾接受香港海關之監管。詳情如下:
To Applicant:
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the Mainland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consignment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Hong Kong Customs in Hong Kong. Details are as follows:

第一部分 貨物詳情 Part I Consignment Particulars

來源地: Place of Origin:				
目的地: 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	從 空運/陸運/海運* () 至 空運/陸運/海運* () From Air/Land/Sea* () To Air/Land/Sea* ()			
抵港船隻/車輛/ 航班編號*: Incom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空運提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1 st conveyance)*	實際抵港 日期/時間: ATA:		
離港船隻/車輛/ 航班編號*: Outgo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空運提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2 nd conveyance)*	預計離港 日期/時間: ETD:		
貨物名稱: Description of goods:				
件數/重量: Pieces/Weight:				

施加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	貨櫃號碼/載具號碼/ 運輸車輛號碼: Container no./ULD no./ ULD vehicle no.	封條號碼: Seal no.	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	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
抵港 Incoming	-	-	-	-
離港 Outgoing	-	-	-	-

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
☐ 有 ☐ 裝貨/卸貨 ☐ 重新包裝 ☐ 儲存 ☐ 其他 ☐ 保持貨物原本狀態 ☐ 否
☐ Yes ☐ Vanning/Devanning ☐ Repacking ☐ Storage ☐ Others ☐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 No

文件查閱:
Document check:
☐ 提單 ☐ 驗單 ☐ 原產地證明書 (號碼: _____) ☐ 其他 (_____)
☐ Bill of Lading ☐ Manifest ☐ Country of Origin (No.: _____) ☐ Others (_____)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公司名稱: Company Name:			
公司地址: Address:			
電話號碼: Telephone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負責人姓名: Name:		日期: Date:	

香港海關印鑑:
Chop of Hong Kong Customs:

海關查詢電話: (852) 3152 0233
Enquiry tel. no.:

海關關長

() 代行)

for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簽發日期:
Date of issue: _____

*請將不適用者刪去 Delete as appropriate

第 1 頁/共 1 頁

5.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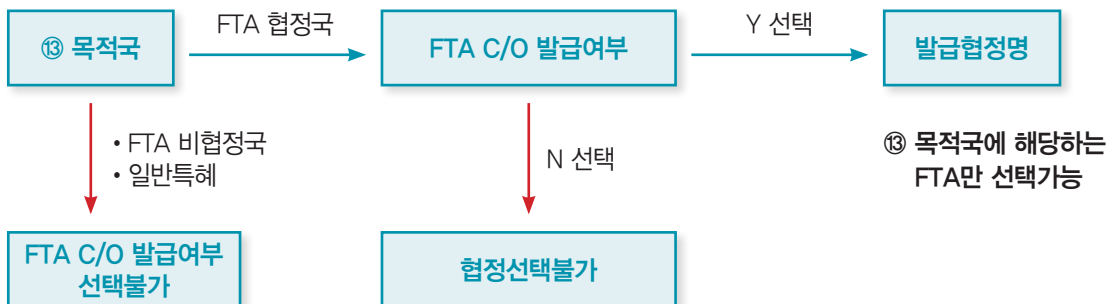
1. 개선 배경

○RCEP 도입에 따라 1국 多협정에 대한 FTA 수출활용률 산출 필요

2. 주요 개선 내용

※ 수출신고서 고시 개정 : '22.5.12(목), 시스템 반영 : '22.5.13(금) 00시부터

- (C/O 발급여부) 수출신고서 원산지 항목 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Y', 'N'으로만* 선택하도록 항목 간소화
- (발급협정명) 수출신고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Y'로 선택 시 ⑬목적국에 해당하는 협정명을 선택하도록 신설



例 ⑬ 목적국이 베트남이고 C/O 발급여부가 Y인 경우, RCEP, 한-아세안, 한-베트남을 발급협정명으로 선택가능하고 그 외의 협정 선택 시 오류 통보

■수출신고서 란사항 작성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수출신고서 란사항 작성 화면' (Export Declaration Form Entry Screen). The '발급협정' (Issuance Agreement) field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원산지증명서발급구분' (Origin Certificate Issuance Category) dropdown menu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showing options: '[Y] 원산지증명서 발급' (Selected), '[N]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and '[Y] 원산지증명서 발급'.

참고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기 준		개 정 안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5)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항 목	작 성 요 령
④ 원산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B : 상대국 보세구역 반입으로 불필요 ※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	④ 원산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 - Y : 원산지증명서 발급 - N :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 (삭제) ※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
〈신 설〉		- 발급협정명	○ 발급(예정)된 원산지증명서로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 선택 (통계부호표 참조) -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Y'인 경우만 선택 - ⑬ 목적국이 FTA 협정국가인 경우에만 선택 - 일반특혜 적용 시 선택하지 않음

5.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개선

참고2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작성 화면

수출신고서 란사항 입력 화면

수출신고서 ★ Home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 > 수출신고

공통사항1	공통사항2	란사항	첨부파일
-------	-------	-----	------

*HS부호
*수출물품명
*거래용명
상표명
*순증량/단위
포장개수

HS코드조회
관번호 001 / 출관수
자동선택여부
거래용명조회
(KG/GT)
신고가격 KRW
신고수량

재수출면세물품
재수출근거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관번호
재수출한양조회

송장부호
*원산지국가
원산지표시여부
발급합정

*Attach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발급구분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모범및규격등록
수출요건확인
수출승인번호
성분내용
수량
수량단위
*단가
*금액
제품번호
*한수정시 수정버튼으로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정
삭제
초기화
미리보기
임시저장
일괄저장
진송

※ '원산지증명서 발급구분'을 'N'으로 선택 시 발급합정 비활성화

원산지표시여부
발급합정

*원산지증명서발급구분
[N]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인증수출자 조회

오류 통보 예시(목적국에서 선택불가능한 협정을 선택한 경우)

통보세관/과 030:부산세관 / C5:(항만)통관검사5과
오류발생문서번호 8148422101487X
정정자수

오류문서key
오류내역

8148422101487X / Y / VN
8148422101487X / Y / VN

001란 목적국(VN)이 FTA 협정국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Y인 경우 발급합정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가능 발급합정코드: 104(한-아세안), 113(한-북트남), 119(RCEP))
002란 목적국(VN)이 FTA 협정국이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Y인 경우 발급합정코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입력 가능 발급합정코드: 104(한-아세안), 113(한-북트남), 119(RCEP))

참고3

국가별 협정선택 연계코드표

국가코드	국가명	협정코드	협정명	국가코드	국가명	협정코드	협정명
AT	오스트리아	106	한-EU	IN	인도	105	한-인도 CEPA
AU	호주	119	RCEP	IS	아이슬란드	103	한-EFTA
AU	호주	110	한-호주	IT	이탈리아	106	한-EU
BE	벨기에	106	한-EU	JE	저지섬	116	한-영국
BG	불가리아	106	한-EU	JP	일본	119	RCEP
BN	브루나이	119	RCEP	KH	캄보디아	119	RCEP
BN	브루나이	104	한-아세안	KH	캄보디아	104	한-아세안
CA	캐나다	111	한-캐나다	LA	라오스	119	RCEP
CH	스위스	103	한-EFTA	LA	라오스	104	한-아세안
CL	칠레	101	한-칠레	LI	리히텐슈타인	103	한-EFTA
CN	중국	119	RCEP	LT	리투아니아	106	한-EU
CN	중국	112	한-중국	LU	룩셈부르크	106	한-EU
CO	콜롬비아	115	한-콜롬비아	LV	라트비아	106	한-EU
CR	코스타리카	117	한-중미	MM	미얀마	119	RCEP
CY	사이프러스	106	한-EU	MM	미얀마	104	한-아세안
CZ	체코공화국	106	한-EU	MT	몰타	106	한-EU
DE	독일	106	한-EU	MY	말레이시아	119	RCEP
DK	덴마크	106	한-EU	MY	말레이시아	104	한-아세안
EE	에스토니아	106	한-EU	NI	니카라과	117	한-중미
ES	스페인	106	한-EU	NL	네덜란드	106	한-EU
FI	핀란드	106	한-EU	NO	노르웨이	103	한-EFTA
FR	프랑스	106	한-EU	NZ	뉴질랜드	119	RCEP
GB	영국	116	한-영국	NZ	뉴질랜드	114	한-뉴질랜드
GP	과델로프	106	한-EU	PA	파나마	117	한-중미
GR	그리스	106	한-EU	PE	페루	107	한-페루
HN	온두라스	117	한-중미	PH	필리핀	119	RCEP
HR	크로아티아	106	한-EU	PH	필리핀	104	한-아세안
HU	헝가리	106	한-EU	PL	폴란드	106	한-EU
ID	인도네시아	119	RCEP	PR	푸에르토리코	108	한-미국
ID	인도네시아	104	한-아세안	PT	포르투갈	106	한-EU
IE	아일랜드	106	한-EU	RO	루마니아	106	한-EU

5.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신고서 작성항목 개선

국가코드	국가명	협정코드	협정명	국가코드	국가명	협정코드	협정명
SE	스웨덴	106	한-EU	TH	태국	119	RCEP
SG	싱가포르	119	RCEP	TH	태국	104	한-아세안
SG	싱가포르	102	한-싱가포르	TR	터키	109	한-터키
SG	싱가포르	104	한-아세안	US	미국	108	한-미국
SI	슬로바키아	106	한-EU	VN	베트남	119	RCEP
SK	슬로베니아	106	한-EU	VN	베트남	113	한-베트남
SV	엘살바도르	117	한-중미	VN	베트남	104	한-아세안

6.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22.5.2.현재)

국가명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
말레이시아	(예시) MY-SC2021B001 * MY: 국가코드, SC: Self-Certification, Year: 2021, B: State code, 001: Reference number
일본	승인월(2자리) + 연번(4자리) + 승인년도(2자리) + 협정번호(RCEP은 “04”) * (예시) 0412342204
중국	“CN”(국가코드) + 지역세관(2자리) + 연번(5자리) / 총 9자리
태국	TH-RCEP + 업체등록번호(13자리)
호주	AU + “11자리 호주 사업자번호(ABN)”
인도네시아 (미발효)	일(2자리) + 월(2자리) + 년(2자리) + 연번(6자리) + 보안(1자리)

※ 상기 표는 RCEP 사무국에서 회람(’22.5.2.)한 “RCEP 협정국별 인증수출자 번호 부여 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됨

II

FTA 관세특례법령 주요 개정사항

※ 이 책자는 '22.5.20. 입법예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22-89호)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최종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원산지서명서 서식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00. 00.>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수출자 · 생산자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4.품목번호(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본선인도가격(FOB) []	6.원산지결정기준			
	금 액	7.자유무역협정명칭				
8.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연번	10.재료명	11.품목번호 (HS No.)	12.원산지	13.가 격		14.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	
15.합 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9.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0.결합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1.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2.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5.기 타		예 [] 아니오 []

1. 원산지소명서 서식 개정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26.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 I)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30.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해당(Y)	미해당(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수 출 자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생 산 자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품명/규격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among -1234 ; TV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품목번호(HS No.)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5.물품가격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원산지결정기준</th><th>기재방법</th></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 - WO</td><td></td></tr> <tr> <td>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td><td>- PE</td></tr> <tr> <td>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td><td>- CC - CTH - CTSH</td></tr> <tr> <td>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td>- BD - BU - MC - NC</td></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td></tr> <tr> <td>바. 특정공정기준</td><td>- SP</td></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td>- OP</td></tr> <tr> <td>아. 기타기준</td><td>- Other</td></tr> </tbody> </table> ○결합기준 기재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 될 경우 : BU 30% + S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7.자유무역협정명칭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8.주요생산공정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예)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1. 원산지소명서 서식 개정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9.연 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재 료 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품목번호(HS No.)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12.원 산 지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가 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공급자(생산자)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합 계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25.원산지기준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 ○제21란부터 제25란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예[√]”로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26란부터 30란까지는 제7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6.수출 대상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회원국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VN” 또는 “베트남”으로 기재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수출물품이 해당 수출 대상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 가치 비율	○제27란을 “해당(Y)”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비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하며, 집적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합니다.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	○수출물품에 대한 제19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0.RCEP 원산지 국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00. 00.>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1.발급번호(Reference No.) :										
2.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3.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팩스번호(Fax)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연번 (S/N)	5.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품목번호 (HS No.)	7.품명 · 규격 [Description · pecification of Good(s)]	8.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원산지포괄 확인기간 (年 월 일 ~ 年 월 일) [Blanket period (YYYY/MM/ DD ~ YYYY/ MM/DD)]	13. 원산지간 이확인 물품 여부 (Simple Declaration of Origin)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개정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14.공급물품 연번(S/N)	15.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Domestic Value Addition of 20%)		16.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발생(Y)	미발생(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작성 방법																			
항 목	작 성 내 용																		
1.발급번호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2.공급하는 자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3.공급받는 자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4.연번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기재합니다.																		
5.자유무역협정명칭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RCEP 등																		
6.품목번호(HS No.)	○공급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7.품명·규격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8.수량 및 단위	○원산지포괄확인인 아닌 경우 공급물품의 수량 및 단위를 기재합니다.																		
9.원산지결정기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table><tr><th>원산지결정기준</th><th>기재방법</th></tr><tr><td>가. 완전생산 물품</td><td>- WO</td></tr><tr><td>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td><td>- PE</td></tr><tr><td>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td><td>- CC - CTH - CTSH</td></tr><tr><td>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td>- BD - BU - MC - NC</td></tr><tr><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td><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td></tr><tr><td>바. 특정공정기준</td><td>- SP</td></tr><tr><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td>- OP</td></tr><tr><td>아. 기타기준</td><td>- Other</td></tr></table>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 PE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또는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 SP																	
	바. 특정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10.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충족에 "√" 를 기재합니다.																		
11.원산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해당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예) 한국산인 경우 "KR" 또는 "한국"으로 기재, 중국산인 경우 "CN" 또는 "중국"으로 기재																		
12.원산지포괄확인기간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기재합니다. 예) 2016.07.01 - 2018.06.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2. 원산지(포괄)확인서 서식 개정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3. 원산지간이확인 물품 여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원산지간이 확인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여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 를 기재합니다.
※ 제14란부터 제16란까지는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적용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4. 공급물품 연번	○ 제5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제4란의 연번을 이 란에 기재 합니다.
15. 국내 부가가치 20% 이상 발생 여부	○ 수출물품이 계약상대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16.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수행 여부	○ 수출물품에 대한 제9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로 기재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00. 00.)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갑지)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접수일자				처리기간
1.수입신고번호				
2.수입자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3.수출자	상호	성명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4.생산자	상호	성명		
	주소 및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5.란 번호				
6.품명 · 모델 · 규격		7.신청일 및 적용법령	신청일 :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 법 제9조제1항 ☐ 법 제9조제2항 ☐	
8.원산지증빙 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9.원산지증명서 발급 · 작성주체	기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10.원산지		11.기관명 및 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12.발급 · 작성 번호		13.발급 · 작성일		
14.총순중량		15.적출국		
16.적출항		17.출항일	18.환적국	
19.환적항		20.환적일		
21.연결원산지 증명서발급 국가		22.제3국송품장 발급국가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개정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24.협정적용 순증량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 (HS No.)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28.원산지결정 기준	완전생산기준 [] 부가가치기준 [] 역외가공기준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결합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세번변경기준 [] 특정공정기준 [] 자율발급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을지)

5.란 번호			
6.품명 · 모델 · 규격			
7.신청일 및 적용법령	신청일 :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 법 제9조제1항 ☐ 법 제9조제2항 ☐	신청일 :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 법 제9조제1항 ☐ 법 제9조제2항 ☐	신청일 : 적용법령 : 법 제8조제1항 ☐ 법 제9조제1항 ☐ 법 제9조제2항 ☐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9.원산지증명서 발급 · 작성주체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10.원산지			
11.기관명			
기관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12.발급 · 작성번호			
13.발급 · 작성일			
14.총순증량			
15.적출국			
16.적출항			
17.출항일			
18.환적국			
19.환적항			
20.환적일			
21.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 국가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23.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24.협정적용 순증량			
25.분할차수			
26.품목번호(HS No.)			
27.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개정

28.원산지결정기준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	[]	부가가치기준	[]
	결 합 기 준	[]	결 합 기 준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특정공정기준	[]	특정공정기준	[]
	역외가공기준	[]	역외가공기준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 율 발 급	[]	자 율 발 급	[]	자 율 발 급	[]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 레
1.신고번호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41234-56-7890123-
2.수입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번호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 증명서 '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합니다.	- ○○통상(주) - 홍○○ - △△도 □□시 ○○구 ○○로 123 - 02-1234-5678 - 02-2345-6789 - ○○○@abcd.com - 123-45-6789 - ○○통상1234567
3.수출자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를 부여한 생산이 발생한 지역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체결상대국이 이스라엘인 경우로서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합니다.)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합니다.)	- ○○○○ Corporation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Jhon △△ - 12 ○○○○ Road #10 □□□ Singapore - 이스라엘의 경우 : 1234567 - 68-1234-5678 - 68-1234-5679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4.생산자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가 소재하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생산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를 부여한 생산이 발생한 지역의 우편번호를 기재합니다. (체결상대국이 이스라엘인 경우에 한합니다.)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 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어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합니다.	- □□□□ Corporation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AI △△ - 123 ○○○○ Road #12-34 □□□□ Singapore - 이스라엘의 경우 : 1234567 - 68-1234-9876 - 68-1234-9875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개정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 레
5.란 번호	○협정관세 적용 신청 물품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적용 신청 물품이 다수일 경우 읍지에 기재합니다.	- 001, 002, 003, . . . , 999
6.품명·모델·규격	○협정관세 신청 물품의 품명·모델·규격을 기재합니다.	- strength mount / ○○○mount / 12*34*56(mm)
7.신청일 및 적용법령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재합니다. ○협정관세 적용 신청의 근거법령에"√"를 기재합니다.	- 2016/07/01
8.원산지증빙서류 종류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해당 근거자료에 "√"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사전심사서 [] 동종동질물품 []
9.원산지증명서발급·작성 주체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주체에 "√"를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 작성한 경우 기 관 [] 자율(수출자) [√] 자율(생산자) [] 자율(수입자) []
10.원산지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EU'로 기재 가능합니다.	-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SG -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US * 국가부호: 국가별 ISO코드(무역통계부호 표 참조, '이하 동일')
11.기관명 및 종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합니다.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에"√"를 기재합니다. * 9번 항목이 "기관"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기관명 Singapore Customs 기관종류 국가기관 [√] 상공회의소 [] 비국가기관(기타) []
12.발급·작성번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를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품목번호(HS No.)를 기재합니다. *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 특수문자('-' , '/' 등)는 생략합니다.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뒤쪽에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 VN-KR/02 71인 경우: 'VNKR0271' 'VNKR0271(20160701)' 'VNKR0271(2016070102)'
13.발급·작성일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을 기재합니다.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을 기재합니다.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생략합니다.	- 발급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례
14.총순중량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100kg
15.적출국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합니다.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선적국이 미국인 경우: US
16.적출항	○B/L상의 선적항을 기재합니다.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17.출항일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합니다.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18.환적국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환적한 경우 : JP
19.환적항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합니다.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Yokohama
20.환적일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합니다.	- 환적일이 2016.7.1인 경우: 2016/07/01
21.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한-아세안 FTA 및 RCEP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베트남 원산지물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VN'
22.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합니다.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 'JP'
23.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생략합니다. * 빈칸은 제거합니다.(붙여서 기재)	- IT-001-○-○123인 경우 : 'IT001○-○123'
24.협정적용 순중량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탄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500kg
25.분할차수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합니다.	- 2회차 분할신고시 : 2
26.품목번호(HS No.)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 6단위를 기재합니다. * 수입신고서의 품목번호와 원산지증명서상의 품목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산지증명서상 품목번호 6단위: 2710.19

3.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서식 개정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작성례
27.협정관세율 (관세율구분부호)	○협정관세율(관세율구분부호)을 기재합니다. -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구분부호를 기재합니다.	- 한-싱 자유무역협정세율이 0%인 항공기용 기관오일(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0.0(FSG)
28.원산지결정기준	○해당 원산지물품의 결정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에 "√"를 기재합니다.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율발급에 "√"를 기재합니다.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 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 결 합 기 준 [√] 특정공정기준 [] 역외가공기준 [] 기타원산지기준 [] 자 율 발 급 []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³,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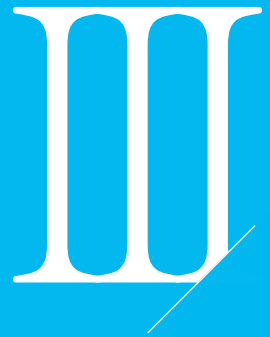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SAME'이라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적습니다. 또한, 증명서가 소급 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를 적습니다.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를 적습니다.
8. 제8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를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라고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결정기준
WO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WP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OP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11. 제11란에는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 (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12. 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13. 제13란은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14. 제14란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하고 발급인장을 날인합니다.



신규 FTA 주요 내용

1. 한-이스라엘 FTA

■(상품양허)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5.2%(수입액 기준 99.9%), 이스라엘은 95.1%(수입액 기준 100%)에 대해 10년 이내 관세 철폐

※ 관세 인하·철폐 스케줄은 부속서 2-나의 양허표에 따름

○(수출) 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관세 즉시 철폐

○(수입) 반도체 제조용 장비 즉시 철폐, 자몽(30%, 7년),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류(6.5%, 5년) 등은 점진 철폐

－(농산물) 쌀 및 쌀 제품(협정의무 배제), 석류(15% 관세 감축 후 유지), 단감·건조감·감귤(양허제외), 맨더린(16년), 천연꿀(19년) 등

■(원산지 규정) ①완전생산 기준, ②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부속서 3-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누적)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로 간주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라도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 공장도가격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농축수산물) [1~14류] 최소허용기준 미적용, [15~24류] 비원산지 재료의 HS 6단위가 상품과 다른 경우에만 적용

－(섬유·의류) [50~63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섬유재료 또는 원사의 중량이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

○(영역원칙) 원칙적으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은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함

－(재반입 상품) 관세당국에 ①수출 상품과 재반입 상품간 동일성, ②비당사국에서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수출 후 재반입되는 상품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역외가공) 한국 또는 이스라엘에서 비당사국에 수출 후 재반입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료는 원산지 재료로 인정

* ① 비당사국으로 수출 전 당사국에서 불인정 공정 이상의 작업·가공

② 수출된 재료에 대한 작업·가공으로 획득,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음,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최종 상품 공정도가격의 10% 이내

③ 당사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한 물품

1. 한-이스라엘 FTA

- (개성공단) 한국에서 수출되어 부속서 3-나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작업·가공을 거친 후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지위 인정
- (직접운송)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해당 상품이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됨이 원칙이나, 단일 탁송물을 구성하는 상품은 비당사국에서 관세당국 감시하에 환적·일시 창고보관되어 운송 가능
 - (비당사국 경유 요건) 상품이 경유 중인 비당사국에서 거래, 소비·사용되지 않고, 하역·재선적·보존공정 외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인증서류) ①복합·결합운송 서류를 포함하여 원산지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의 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 ②비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 ③직접 선적을 증빙하는 그 밖의 서류

▣(PSR 구조) 챕터별 공통 원칙에 기초한 단순한 원산지 기준 적용

- (자동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
- (기계, 전기·전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
- (섬유·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60% 이하 중 선택. 단, 의류는 역내에서 재단 및 봉제(또는 다른 결합) 공정이 수행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화학제품) 대부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60% 이하 중 선택. 다만, 일부 품목은 특정 화학공정 수행 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철강·비철금속)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외산 재료 가치가 공장도 가격의 50% 이하 중 선택
 - * 제8류(기타 비금속 및 그 제품 등)는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

▣(원산지 증명)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적으로 활용

- (기관발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출자·생산자 등의 신청을 받아 부속서 3-다에 규정된 서식으로 서면 또는 전자 발급
- (자율증명) ①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부속서 3-라-1 서식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②1천불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부속서 3-라-2 서식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2. 한-인도네시아 CEPA

▣(상품양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5%, 인도네시아는 93%의 관세 철폐

- (수출) 주력 수출물품인 철강(5~15%), 자동차(5%, 10~15년), 석유화학(5%, 15년), 섬유(5%, 최대 15년) 등 관세 철폐
- (수입) 민감품목인 농산물(391개 품목), 섬유(면사, 12개 품목), 임산물(목재류, 58개 품목) 등은 기준세율 유지 또는 양허 제외

▣(원산지 규정) ①완전생산 기준, ②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부속서 3-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누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특혜 자격이 있는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품을 작업·가공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라도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 FOB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50~63류 제외)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섬유·의류) [50~63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 중량이 상품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특정상품의 취급) 한-아세안 FTA상의 특정상품의 취급(부속서3 제3조) 규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교환각서('09.2.27일 교환) 적용
- (직접운송) 협정상の特혜대우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사국간 영역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됨이 원칙이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 (비당사국 경유 요건) ①지리적 또는 운송 요건에 관련한 고려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유여야 하고, ②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아야 하며, ③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입증서류) ①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또는 ②직접운송 요건을 준수됨을 입증하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을 포함

▣(PSR 구조)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 유지하되 일부 기준은 완화

- (자동차) 자동차는 대부분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자동차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적용

2. 한-인도네시아 CEPA

- (섬유·의류)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경기준 적용
- (철강)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 스테인레스강 중 일부 품목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적용

■(원산지 증명) 기관발급 방식은 협정 발효 즉시 시행, 자율증명 방식은 순차적으로 도입

- (기관발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출자·생산자 등의 신청을 받아 부속서 3-나에 규정된 서식으로 발급*

* 다만, 원산지증명서 정보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관세당국 간 교환되는 경우,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 (자율증명) 협정 발효일부터 2년 이내에 관세위원회를 통해 규정 및 서식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후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시행. 다만,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은 발효 후 10년(추가 연장 최대 10년) 이내 시행

3. 한-캄보디아 FTA

■(상품양허)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 철폐

- 對캄 최대 수출품인 화물차(관세율 15%), 승용차(35%) 관세는 즉시 철폐, 건설중장비·기계(15%) 10년 내 철폐
- ※ 관세 인하·철폐 스케줄은 부속서 2-나의 양허표에 따름

■(원산지 규정) ①완전생산 기준, ②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③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부속서 3-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누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에서 특혜 자격이 있는 완성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완성품을 작업·가공한 국가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최소허용기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이라도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 FOB 가격의 10% 이하인 경우(50~63류 제외)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섬유·의류) [50~63류]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 중량이 상품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특정상품의 취급) 부속서 3-나에 규정된 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로 개성공단에서 생산·가공되어 재수입되는 상품이 해당 부속서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직접운송)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협정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사국간 영역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대해 적용됨이 원칙이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 (비당사국 경유 요건) 그 상품은 ①중간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②하역 및 재선적, 보관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공정 외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함
 - (입증서류) ①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또는 ②직접운송 요건을 준수됨을 입증하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 *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서류를 결합한 것을 포함

■(PSR 구조) 한-아세안 FTA와 일관성 유지하되 일부 기준은 완화

- (자동차) 자동차는 대부분 역내가치포함비율 45% 이상(전기차는 40% 이상), 자동차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섬유·의류) 대부분 2단위(CC)·4단위(CTH) 세번변경기준 적용
- (화학제품) 대부분 4단위(CTH)·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 (철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40% 이상 중 선택

■(원산지 증명) 기관발급 방식과 자율증명 방식 중 선택적으로 활용

- (기관발급)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수출자·생산자 등의 신청을 받아 부속서 3-라 서식으로 발급
- (자율증명) 관세당국이 인증한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부속서 3-마의 서식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IV

주요 민원 질의 · 해석 사례

1. RCEP

Q1

RCEP 원산지증명서 제11번란(원산지국가)에 국가명이 모두 대문자로 기재된 RCEP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인정 여부

A1

국가명을 모두 대문자로 기재한 경우 협정 3.26조의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오류에 해당하므로 협정에 규정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나, 통관애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정에 규정된 작성 방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구비 권고

Q2

RCEP 원산지상품에 대한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방법

A2

RCEP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2장 및 제3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해 ①역내 중간 경유국에서 RCEP 제3.19조의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RCEP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②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음

②의 경우(우리나라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 활용방법은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지침'을 참고

1. RCEP

Q3

RCEP 회원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여 RCEP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RCEP 특혜세율 적용방법

A3

- ① 우리나라에서 물류·보존·운송 상 필요한 공정 외 추가가공을 거치는 경우, 협정 제3.4조(누적)에 따라 RCEP 원산지증명서 신규 발급. 다만 이 경우 누적 대상 원재료 수입 시 적용하는 협정과 별도로 누적 대상 원재료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 필요
- ② 우리나라에서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는 경우, 협정 제3.19조(연결 원산지 증명)에 따라 원 수출국에서 발급한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RCEP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다만 이 경우 중간 경유 수출자인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제2.6조(관세 차별)에 따른 원산지 국가 판단 의무 발생

Q4

제3자 송장 발행 시 RCEP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A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제17란의 'Third-Party invoicing'에 체크하고 제14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기재



Q5

RCEP 발효 전 RCEP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A5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에서 원산지발급을 위한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 발효 전에 RCEP 회원국으로부터 구매한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이 협정의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

다만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함

Q6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가 RCEP 누적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6

RCEP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다른 RCEP 회원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최종상품에 사용된 상품 또는 재료의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갖춘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

따라서 개별 FTA 원산지증명서로도 해당 원재료가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산 재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누적 증빙자료가 될 수 있으나, 안정적인 특혜적용을 위해 누적 대상 재료에 대해 RCEP 원산지증명 확보를 권고

누적 입증서류에 대한 RCEP 회원국 간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 FTA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1. RCEP

Q7

RCEP 회원국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A7

RCEP 제3.16조에 따르면 RCEP 회원국의 원산지증명방식으로 ①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②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③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를 규정하고 있음

일부 RCEP 국가는 현재 규정된 세 가지의 원산지증명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의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Q8

RCEP 제2.6조(관세차별) 제6항의 적용방법

A8

RCEP 제2.6조제6항은 수입자가 동조 제1항에 따른 수출당사국 또는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재료
중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아닌 다른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①가호에 따라 원산지 재료에 기여한 당사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또는 ②나호에 따라
모든 RCEP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 중 최고 세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

2. 기타 협정

Q1 (공통) 반드시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A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는 ①원산지증명서 사본, ②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자이미지화한 것 또는 ③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을 보관할 수 있으나,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Q2 (공통) HS 2022 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작성방법

A2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서와 달리 해당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는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HS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체약상대국과의 합의에 의해 원산지증명서 HS버전을 수입신고서와 일치시킬 수 있음(예) 중국)

다만, 수입신고 상의 HS코드와 원산지증명서 상의 HS코드가 상이한 경우,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기타 협정

Q3

(공통)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인증사항에 실질적 변화가 생겨 새로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A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제14조에 따라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세번변경 없이 모델, 규격 등만 다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이미 품목별 인증을 획득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는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함

Q4

(한-미) 최소허용기준 예외규정의 '제1류~제24류'의 범위

A4

한-미 FTA 부속서 6-나의 최소허용기준 예외 규정 카호의 '제1류~제24류'는 해당 류에 포함되는 전체 품목을 의미하며 농축수산물에 한정되지 않음

Q5 (한-중) 원산지증명서 11번란의 중량 기재 방법

A5

- 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르면 제11란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 기재가 원칙이므로 순중량만 기재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 필요
- ② 총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외에도 중국과 합의한 31개의 단위로 기재가능
- ③ 원산지증명서 상 총중량과 선적서류 상 중량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선적서류상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상에 기재된 총중량만큼만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함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가능한 중량 등 수량단위(31개)

연 번	수량 단위	수량단위 정의(영문)	수량단위 정의(국문)	금지되는 유사표기 예시
1	2U	Pair	쌍,컬레,족	PA,PAI
2	BAG	Bag	가방	BG,BA
3	BLL	Barrel	배럴	BA,BAL
4	BOX	BOX	박스	BX
5	BTL	Bottle	병	BO,BOT,BV
6	CAN	Can	캔	CA
7	CT	Carton	카톤,케이스	CTN,CS,BR
8	DRM	Drum	드럼(drum)	DR,DM
9	DZ	Dozen	더즌(dozen,12개)	DZM
10	EA	EA	개	
11	GLI	Uk gallon	갤런(3,74581 dm3,UK)	
12	GLL	US gallon	갤런(4,54062 dm3,US)	
13	GR	Gram	그램	GRM
14	GT	Gross Ton/long ton	그로스 톤,롱톤	
15	KG	Kg	킬로그램	KGS
16	KMT	Kilometer	킬로미터	KM,KT,KL
17	L	Liter	리터	VI,LT,LTR
18	LBR	Pound	파운드	LB,PN
19	M	Meter	미터	MTR
20	M2	Square meters	Square meters(제곱미터)	SM
21	M3	Cubic meter	입방미터	CBM
22	PC	Piece	피스(Piece)	PCS,PCE,PSC
23	PKG	Pack, Package	팩키지(Package)	PK,PH
24	RL	Roll	롤(Roll), 코일(Coil)	RO,CL,CX,ROL,LAN
25	SET	Set	세트(Set)	ST
26	SF	Square feet	제곱피트	
27	SH	Sheet of Paper	매	
28	TNE	Metric ton	1,000Kg(Metric Ton)	MT,TN
29	TU	Thousand unit	천개	
30	U	A unit	개,본,매,두,필,대,량,기,척,착,갑	UN,1B,MR,NO,PL,OU
31	YD	Yard	야드	

2. 기타 협정

Q6

(한-EU) 인증수출자 원산지신고서 작성기준인 '전체가격 6천유로' 산정 기준

A6

한-EU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의 기준이 되는 '전체가격(TOTAL VALUE)'에 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관세가격인지, 순수한 원산지물품의 가격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관세가격, 비원산지 재료, 원산지 재료의 가격 결정 시 관세평가협정을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탁송화물의 전체가격을 결정 시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송품장 상 운임 등과 원산지제품의 가격을 각각 구분할 수 있다면 운임 등을 전체가격에서 제외 가능

Q7

(한-EU)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에 기재된 EU 인증수출자 원산지 문구로 한-EU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A7

협정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및 EU집행위원회 의견('14.6월)에 따르면 제3국 발행송장 거래 시 계약 상대국의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진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허용

제3국 송장거래 시 ①EU 인증수출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다른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거나, ②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에 협정에 규정된 요건에 맞게 EU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하고 작성장소, 일자 및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근거로 한-EU 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

Q8 (한-EU, 한-영) 원산지신고서에 해당하는 상업서류의 범위

A8

한-EU 또는 한-영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라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한-영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다만 ^①원산지 입증을 위해 상업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에 별도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및 ^②선하증권(B/L)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음

Q9

(한-영)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한-영 FTA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

A9

한-영 FTA 의정서 제13조 및 한-영 FTA 운영지침에 따라 'EU를 경유하여 영국에서 한국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대해 협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영 FTA 직접운송 특혜대우를 적용할 수 있으며, 경유하는 EU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을 협정발효 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발효일 후 2년 내 재검토)

다만 이 경우, 물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Note

TO DO

Note

TO DO

Note

TO DO

22년 달라지는 FTA 관세행정

발행일 2022년 6월 8일
발행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디자인 다인비

※ 이 책의 저작권은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에 있습니다. 본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본 책자의 내용은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